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17년 4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3.5% 증가(전월대비 1.0% 감소)

- 제조업 생산은 금속가공(-7.4%), 기타운송장비(-7.8%)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기계장비(19.2%), 전자부품(7.0%)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함(전월대비 2.2%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3.6%), 전문·과학·기술(-3.3%)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6.5%), 보건·사회복지(10.2%)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함(전월대비 0.1% 증가).

◆ 2017년 4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2.8%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4.1%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5.8%),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5%), 의복 등 준내구재(1.7%) 판매가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함(전월대비 0.7% 증가).
-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0.5%) 투자는 감소하였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20.8%)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4.1% 증가함(전월대비 4.0%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토목(-3.1%) 공사 실적이 줄었으나 건축(29.0%)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9.4%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주택, 사무실·점포 등 건축(17.8%) 및 기계설치, 도로·교량 등 토목(95.1%)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29.7% 증가함.

◆ 2017년 4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 선행종합지수도 전월 대비 0.5%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함.

◆ 2017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0% 상승(생활물가지수 전년 동월대비 2.5% 상승)

- 2017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2.80(2015년=100)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함(전월 대비 0.1%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통신(-0.3%), 오락·문화(-0.4%)를 제외한 교통(4.5%), 식료품·비주류음료(3.4%), 음식·숙박(2.4%) 등에서 상승함.
 - 2017년 5월 생활물가지수는 102.92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함(전월대비 변동 없음).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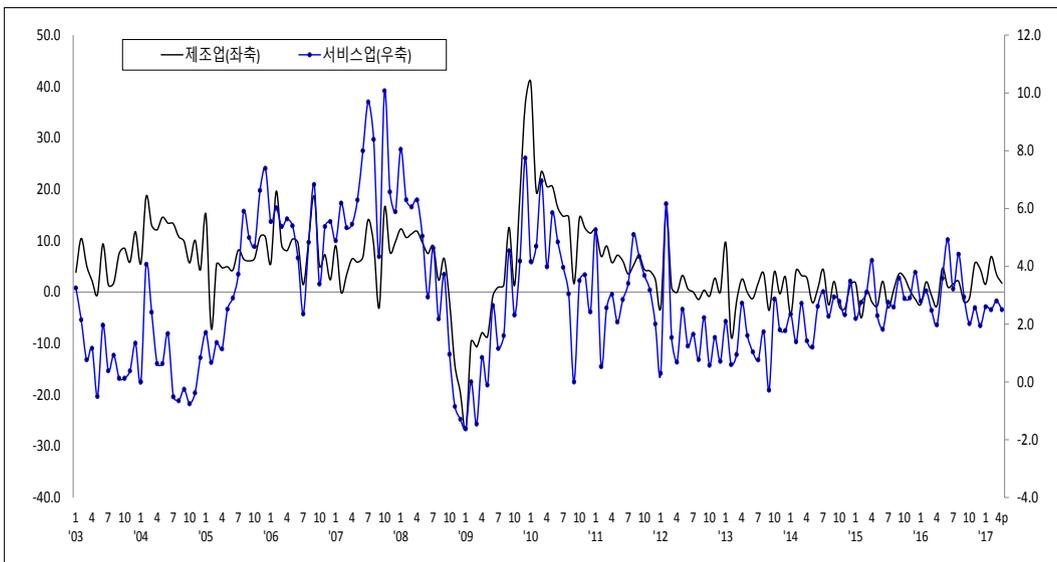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4월	1/4p	4월 ^p
생산	광공업 생산	-1.7	-0.7	0.0	-2.0	0.0	-0.9	-1.5	-0.2	0.0	-0.6	-0.2	1.0	0.6	2.8	1.0	-2.7	3.7	1.7(-2.2)
	제조업 생산	-1.8	-0.8	0.0	-2.2	-0.1	-1.0	-1.4	-0.4	0.1	-0.6	-0.4	1.1	0.7	2.9	1.0	-2.7	3.8	1.7(-2.2)
	출하	-2.3	-1.0	-0.2	-1.3	-0.2	-0.7	-1.3	0.8	0.3	-0.3	-0.8	1.5	0.0	2.3	0.6	-1.5	3.3	-0.2(-2.6)
	내수	-2.8	-1.2	-0.4	-2.6	0.2	-0.7	-0.1	1.0	1.6	0.5	0.9	1.0	0.0	3.8	1.3	-1.9	3.1	0.7(-2.6)
	수출	-1.7	-0.6	0.1	0.3	-0.6	-0.6	-2.5	0.5	-1.4	-1.0	-2.8	2.0	0.0	0.5	-0.1	-1.2	3.6	-1.2(-2.6)
	서비스업생산	0.8	1.7	0.7	2.7	2.2	2.8	2.5	2.8	3.1	2.9	2.8	3.7	3.6	2.1	3.0	2.0	2.6	2.5(0.1)
소비	소비재 판매	0.2	1.1	0.7	1.9	1.6	1.6	2.9	3.2	5.7	3.4	4.6	6.2	3.6	2.5	4.3	3.8	2.0	2.8(0.7)
투자	설비투자	-15.4	-10.0	-4.7	5.1	4.6	8.4	5.2	10.0	1.7	6.2	-7.1	0.8	-4.9	5.9	-1.3	-2.5	18.0	14.1(-4.0)
물가		1.1	1.6	1.4	1.0	1.3	0.6	0.5	0.7	1.1	0.8	1.1	0.9	0.9	1.5	1.0	0.8	2.0	2.0(0.1)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가스업(D)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7년 5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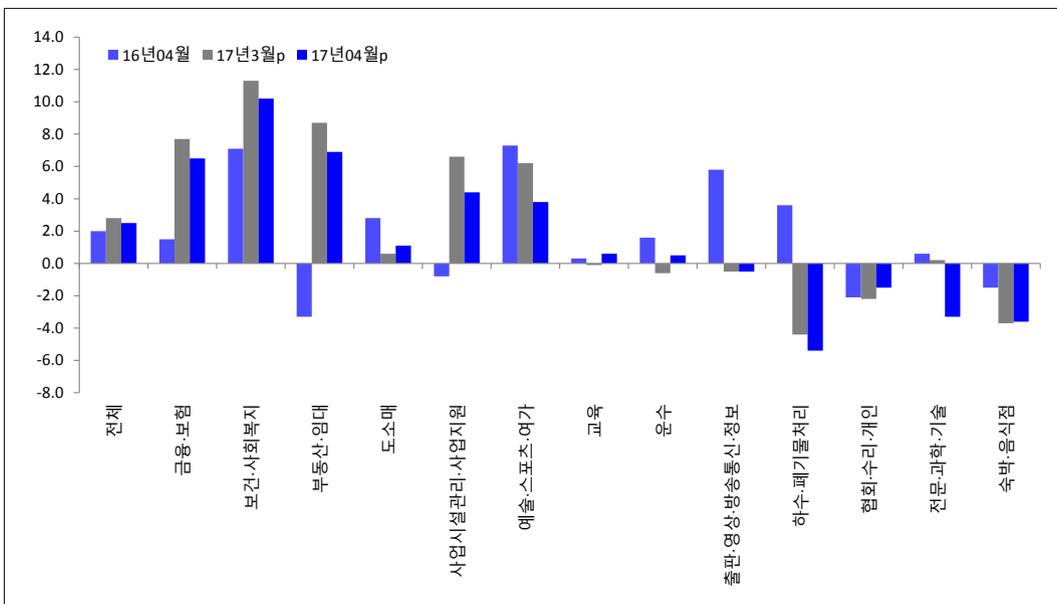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2017년 3월, 4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7. 6), 『2017년 4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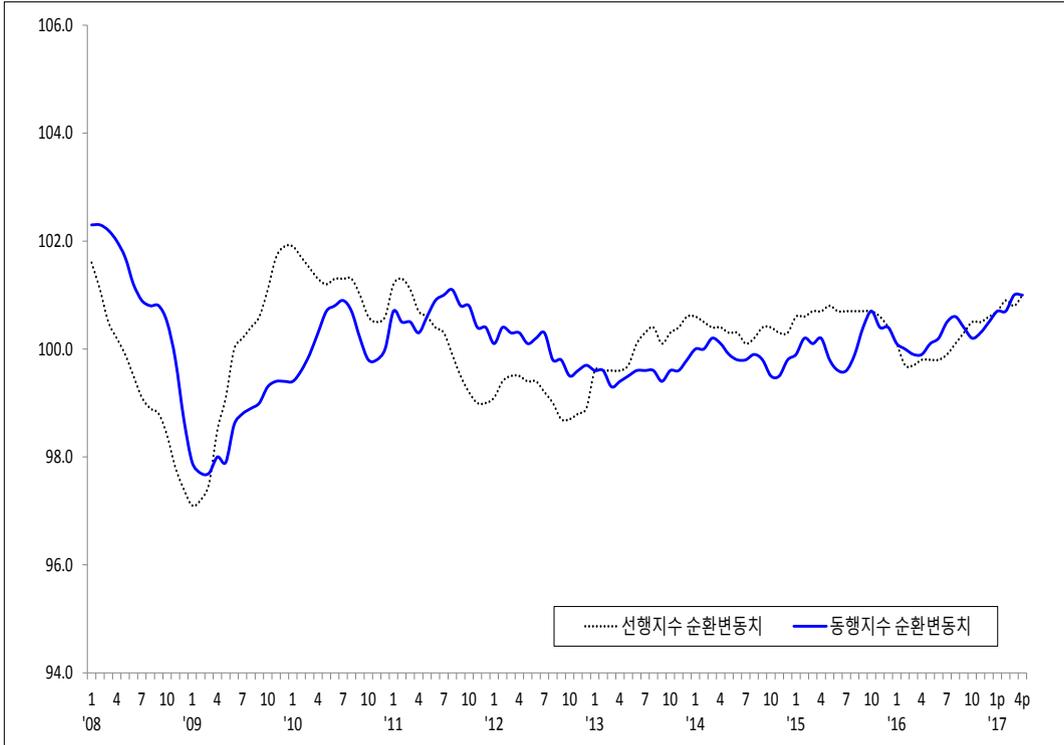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종욱, 동향분석실 연구원)

● 고용 동향

◆ 노동참여 증가로 취업자 증가 지속, 비경제활동인구 감소

- 2017년 5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7,82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3천 명(1.4%) 증가함.
 - － 성별로 보면 남성(186천 명(1.2%))과 여성(187천 명(1.6%))이 비슷한 증가를 함.
 - － 2016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1%를 넘는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더 많았음.
- 2017년 5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3.6%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함.
 - － 성별로 보면 남성(74.5%)은 0.2%p, 여성(53.1%)은 0.4%p 상승해 남녀 모두 증가했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5월 중 취업자는 26,82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5천 명(1.4%) 증가함.
 - － 성별로 보면 남성은 184천 명, 여성은 191천 명 증가함(그림 1 왼쪽 참조).
- 2017년 5월 중 고용률은 61.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함.
 - －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 영향으로 여성 고용률은 0.5%p 증가한 51.3%를 기록하였고 남성 고용률은 0.2%p 증가한 71.7%를 기록함.
 - － 고령화 효과를 제거한 15~64세 고용률은 0.7%p 상승한 67.0%를 기록함(그림 1 오른쪽 참조).
- 2017년 5월 중 실업자는 1,00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 명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함.
 - － 청년(15~29세) 실업률은 9.3%로 전년동월(9.7%)에 비해 0.4%p 감소(그림 2 왼쪽).
- 2017년 5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90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 명(-0.2%) 감소함.
 - － 비경제활동사유 중 ‘재학·수강’은 최근까지 감소폭이 둔화되었으나 2017년 3월 이후 감소폭이 커지며 5월 177천 명 감소해 추세가 가팔라진 가운데, ‘육아·가사’의 사유는 감소세를 이어가며 2016년 5월 대비 54천 명 감소함.
 - － 비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취업준비’인 경우는 84천 명 증가해 증가폭이 커짐(그림 2 오른쪽).

－ 한편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62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천 명 증가함.

〈표 1〉 주요고용지표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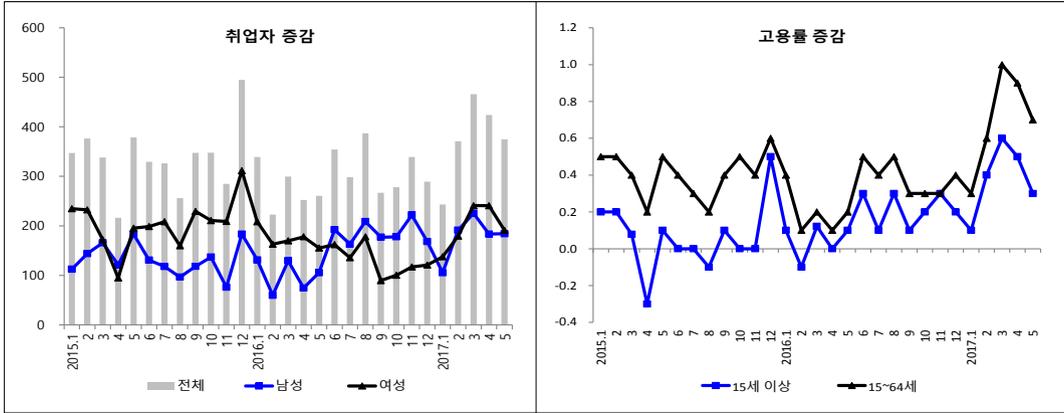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5월	5월	3월	4월	5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2,513	43,017	43,402	42,975	43,387	43,666	43,697	43,735
	(증가율)	(1.0)	(1.2)	(0.9)	(1.2)	(1.0)	(0.8)	(0.8)	(0.8)
	경제활동인구	26,536	26,913	27,266	27,211	27,455	27,409	27,751	27,828
	(증가율)	(2.6)	(1.4)	(1.3)	(1.7)	(0.9)	(1.7)	(1.9)	(1.4)
	취업자	25,599	25,936	26,241	26,189	26,450	26,267	26,577	26,824
	(증가율)	(2.1)	(1.3)	(1.2)	(1.5)	(1.0)	(1.8)	(1.6)	(1.4)
	증가수	533	337	300	379	261	466	424	375
	남성	(266)	(132)	(149)	(183)	(105)	(225)	(183)	(184)
	여성	(267)	(205)	(151)	(195)	(155)	(241)	(241)	(191)
	참가율	62.4	62.5	62.8	63.3	63.3	62.8	63.5	63.6
	남성	(74.0)	(73.8)	(73.9)	(74.5)	(74.3)	(73.8)	(74.4)	(74.5)
	여성	(51.3)	(51.8)	(52.1)	(52.6)	(52.7)	(52.2)	(53.0)	(53.1)
	고용률	60.2	60.3	60.5	60.9	61	60.2	60.8	61.3
	남성	(71.3)	(71.1)	(71.1)	(71.8)	(71.5)	(70.7)	(71.2)	(71.7)
여성	(49.5)	(50.0)	(50.2)	(50.6)	(50.8)	(50.0)	(50.9)	(51.3)	
실업자	937	976	1,025	1,022	1,005	1,143	1,174	1,003	
실업률	3.5	3.6	3.8	3.8	3.7	4.2	4.2	3.6	
남성	(3.6)	(3.7)	(3.9)	(3.7)	(3.8)	(4.1)	(4.4)	(3.7)	
여성	(3.5)	(3.6)	(3.6)	(3.8)	(3.5)	(4.2)	(4.1)	(3.4)	
비경제활동인구	15,977	16,105	16,136	15,764	15,932	16,257	15,947	15,907	
(증가율)	(-1.5)	(0.8)	(0.4)	(0.5)	(1.1)	(-0.6)	(1.1)	(-0.2)	
15~64세	참가율	67.8	68.3	68.7	68.8	69.0	69.1	69.7	69.6
	남성	(78.6)	(78.6)	(78.9)	(79.1)	(79.1)	(79.1)	(79.8)	(79.7)
	여성	(57.0)	(57.9)	(58.4)	(58.3)	(58.7)	(58.9)	(59.4)	(59.3)
	고용률	65.3	65.8	66.0	66.1	66.3	66.1	66.6	67.0
	남성	(75.7)	(75.7)	(75.8)	(76.1)	(76.0)	(75.8)	(76.2)	(76.7)
여성	(54.9)	(55.7)	(56.2)	(55.9)	(56.5)	(56.3)	(56.8)	(57.1)	

주 :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7. 6), 『2017년 5월 고용동향』.

[그림 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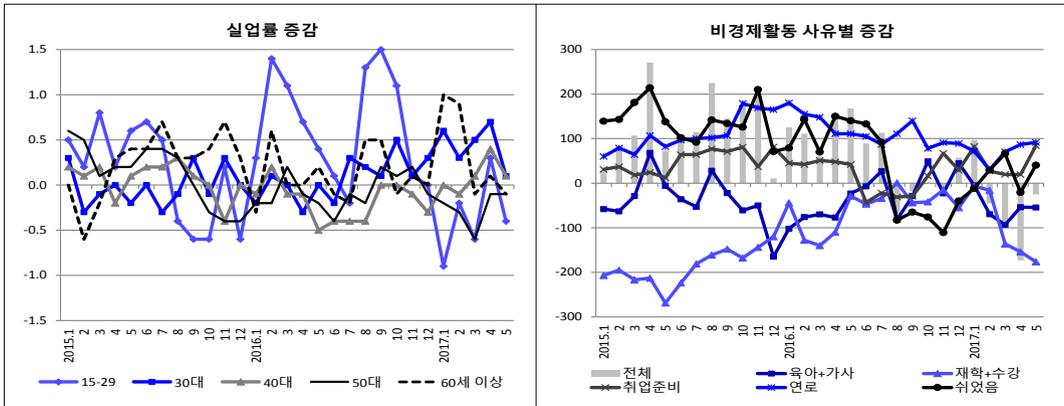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주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과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고, 취업 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KOSIS.

◆ 30~40대와 20~2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증가

- 2017년 5월 중 연령별 취업자는 60세 이상(278천 명, 7.0%)과 50~59세(140천 명, 2.3%)와 25~29세(37천 명, 1.6%)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30대와 40대는 취업자가 소폭 감소함.
 - 2016년 이후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60세 이상과 50대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이어 가며 취업자 증가를 견인함(그림 3 참조).
 - 2017년 들어 증가세를 보였던 25~29세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20~24세의 감소 영

향으로 20대 취업자는 10천 명 감소함.

-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40대는 지속적으로 취업자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함.

〈표 2〉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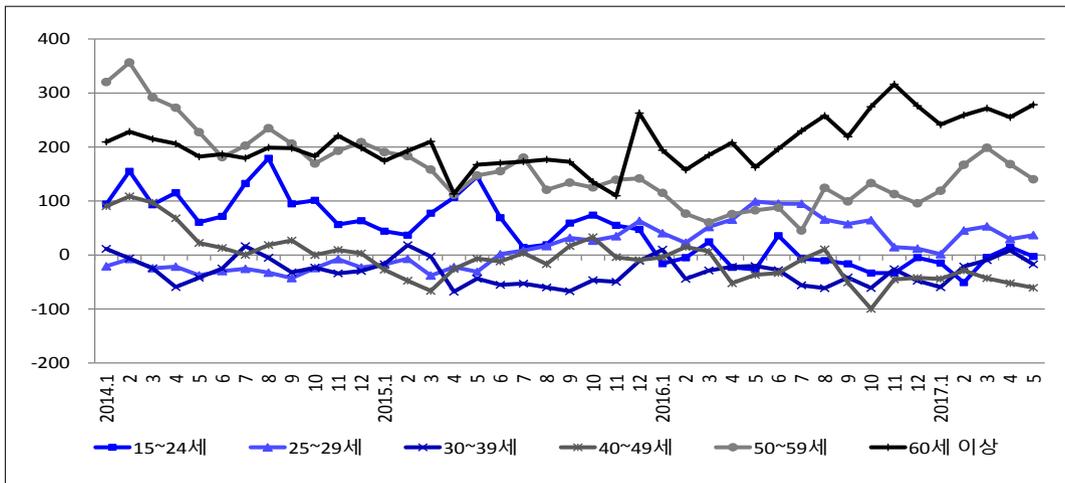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5월	5월	3월	4월	5월
전 체	25,599 (2.1)	25,936 (1.3)	26,235 (1.2)	26,189 (1.5)	26,450 (1.0)	26,267 (1.8)	26,577 (1.6)	26,824 (1.4)
15~19세	244 (9.1)	245 (0.1)	240 (-2.0)	248 (6.5)	230 (-7.2)	237 (6.7)	264 (17.4)	273.9 (19.2)
20~29세	3,625 (1.6)	3,693 (1.9)	3,746 (1.4)	3,716 (2.7)	3,806 (2.4)	3,686 (0.9)	3,725 (0.1)	3,796 (-0.3)
20~24세	1,359 (6.4)	1,422 (4.6)	1,417 (-0.3)	1,464 (9.8)	1,455 (-0.6)	1,355 (-1.4)	1,375 (-1.7)	1408 (-3.2)
25~29세	2,266 (-1.1)	2,272 (0.2)	2,329 (2.5)	2,252 (-1.4)	2,351 (4.4)	2,331 (2.3)	2,350 (1.3)	2,388 (1.6)
30~39세	5,714 (-0.4)	5,676 (-0.7)	5,640 (-0.6)	5,673 (-0.8)	5,653 (-0.4)	5,621 (-0.2)	5,629 (0.2)	5635.8 (-0.3)
40~49세	6,682 (0.6)	6,668 (-0.2)	6,640 (-0.4)	6,687 (-0.1)	6,650 (-0.5)	6,566 (-0.6)	6,580 (-0.8)	6,589 (-0.9)
50~59세	5,845 (4.3)	5,994 (2.5)	6,086 (1.5)	6,029 (2.5)	6,112 (1.4)	6,173 (3.3)	6,227 (2.8)	6251.8 (2.3)
60세 이상	3,489 (6.1)	3,661 (4.9)	3,884 (6.1)	3,837 (4.6)	4,000 (4.2)	3,983 (7.3)	4,152 (6.5)	4,278 (7.0)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7. 6), 『2017년 5월 고용동향』.

〔그림 3〕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상용직 크게 증가한 가운데 자영업자 증가폭 둔화

○ 2017년 5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19,97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4천 명(1.7%) 증가해 증가 추세가 이어졌으며, 비임금근로자는 6,84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천 명(0.6%) 증가해 증가폭이 빠르게 둔화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017년 5월 337천 명 증가해 임금근로자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일용근로자도 130천 명 증가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감(그림 4 왼쪽).
- 반면 임시근로자는 2016년 5월 대비 133천 명 감소해 감소추세를 지속함.
- 한편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6년 5월 대비 37천 명 증가해 큰 폭으로 둔화하였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15천 명 증가해 증가폭 둔화를 이어감(그림 4 오른쪽).

〈표 3〉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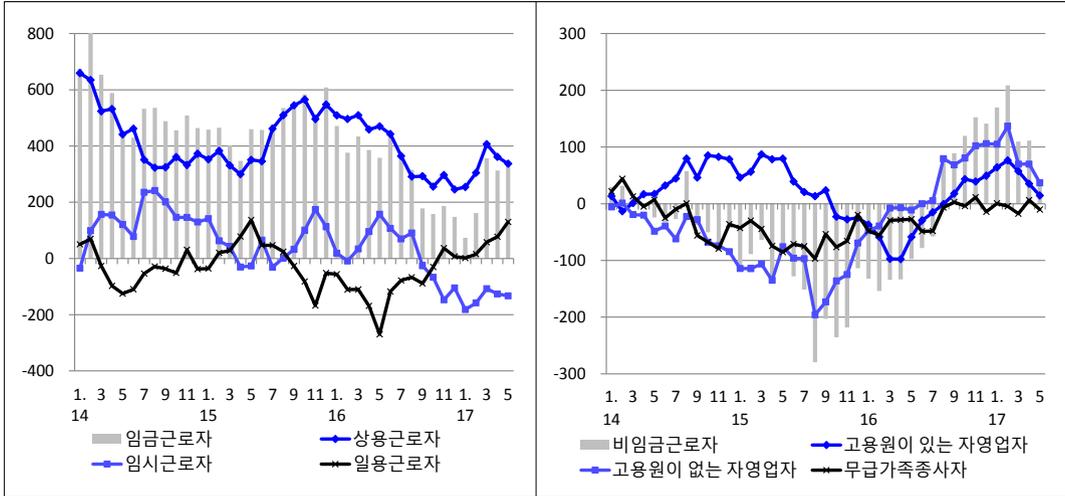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5월	5월	3월	4월	5월
전 체	25,599 (2.1)	25,936 (1.3)	26,235 (1.2)	26,189 (1.5)	26,450 (1.0)	26,267 (1.8)	26,577 (1.6)	26,824 (1.4)
비임금근로자	6,857 (-0.2)	6,706 (-2.2)	6,689 (-0.3)	6,904 (-1.2)	6,807 (-1.4)	6,677 (1.7)	6,798 (1.7)	6,848 (0.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50 (2.7)	1,581 (2.0)	1,561 (-1.3)	1,625 (5.1)	1,566 (-3.6)	1,578 (3.8)	1,566 (2.3)	1,581 (0.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102 (-0.9)	3,982 (-2.9)	4,009 (0.7)	4,077 (-1.8)	4,065 (-0.3)	4,038 (1.8)	4,090 (1.7)	4,102 (0.9)
무급가족종사자	1,205 (-1.3)	1,144 (-5.1)	1,119 (-2.2)	1,202 (-6.6)	1,175 (-2.3)	1,062 (-1.6)	1,142 (0.6)	1,165 (-0.9)
임금근로자	18,743 (3.0)	19,230 (2.6)	19,546 (1.6)	19,285 (2.4)	19,643 (1.9)	19,589 (1.9)	19,779 (1.6)	19,977 (1.7)
상용근로자	12,156 (3.8)	12,588 (3.6)	12,974 (3.1)	12,517 (2.9)	12,987 (3.8)	13,281 (3.2)	13,268 (2.8)	13,324 (2.6)
임시근로자	5,032 (2.9)	5,086 (1.1)	5,104 (0.4)	5,058 (-0.5)	5,215 (3.1)	4,895 (-2.2)	4,986 (-2.5)	5,082 (-2.6)
일용근로자	1,555 (-2.2)	1,556 (0.1)	1,469 (-5.6)	1,710 (8.7)	1,441 (-15.8)	1,414 (4.3)	1,526 (5.3)	1,571 (9.0)
1~17시간	1,177 (0.4)	1,222 (3.8)	1,273 (4.2)	1,196 (4.5)	1,223 (2.3)	1,369 (12.5)	1,347 (5.6)	1,317 (7.7)
18~35시간	2,792 (-21.2)	2,776 (-0.6)	3,206 (15.5)	2,445 (9.2)	2,507 (2.5)	2,698 (4.6)	2,707 (-53.1)	2,597 (3.6)
36시간 이상	21,220 (6.4)	21,535 (1.5)	21,346 (-0.9)	22,259 (0.6)	22,406 (0.7)	21,861 (0.8)	22,234 (18.2)	22,615 (0.9)
주당 평균 근로시간	43.8	43.6	43.0	44.4	43.7	43.1	43.3	43.5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7.6), 『2017년 5월 고용동향』.

[그림 4]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7년 5월 중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91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5천 명(4.9%)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61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9천 명(0.9%) 증가하였음.
- 17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는 94천 명(7.7%) 증가해 증가세를 이어감.

◆ 건설업 취업자 가파른 증가세 지속,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 둔화

-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11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감소폭이 넉 달 연속 10만 명 아래로 줄어든 반면, 건설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함.
- 2017년 5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운수업에서 44천 명(-3.1%) 감소해 모든 산업을 통틀어 가장 큰 감소를 했고, 뒤이어 제조업에서 25천 명(-0.6%), 금융 및 보험업에서 20천 명(-2.6%) 감소함(그림 5 참조).
- 반면 건설업 취업자 증가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7년 5월 전년동월대비 162천 명 증가해 큰 폭의 증가추세를 유지함.
- 한편 2017년 들어 석 달 연속 가파른 증가를 하던 도소매업이 5월 52천 명 증가에 그쳤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도 2016년 5월 대비 33천 명 증가에 그쳐 자영업자 증가폭 둔화에 영향을 줌.

〈표 4〉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5월	5월	3월	4월	5월
전 산업	25,599 (2.1)	25,936 (1.3)	26,235 (1.2)	26,189 (1.5)	26,450 (1.0)	26,267 (1.8)	26,577 (1.6)	26,824 (1.4)
농림어업	1,452 (-4.5)	1,345 (-7.4)	1,286 (-4.4)	1,534 (-7.4)	1,435 (-6.5)	1,173 (-4.6)	1,355 (-1.0)	1,438 (0.2)
광업	13 (-15.8)	14 (2.3)	19 (38.2)	13 (-17.6)	19 (42.0)	21 (10.5)	21 (15.3)	23 (24.2)
제조업	4,330 (3.5)	4,486 (3.6)	4,481 (-0.1)	4,464 (3.2)	4,514 (1.1)	4,441 (-1.8)	4,441 (-1.4)	4,489 (-0.6)
전기·가스·증기·수도	83 (-8.3)	93 (12.2)	89 (-3.9)	89 (10.0)	91 (2.1)	86 (-9.9)	84 (-7.0)	88 (-3.4)
하수, 원료재생·복원	87 (20.1)	88 (0.9)	96 (9.0)	92 (0.4)	97 (5.3)	102 (12.5)	101 (3.1)	99 (2.8)
건설업	1,796 (2.4)	1,823 (1.5)	1,845 (1.2)	1,862 (2.3)	1,840 (-1.2)	1,908 (9.4)	1,961 (8.9)	2,002 (8.8)
도매 및 소매업	3,792 (3.6)	3,783 (-0.2)	3,729 (-1.4)	3,775 (0.9)	3,692 (-2.2)	3,792 (3.1)	3,773 (2.1)	3,744 (1.4)
운수업	1,407 (-0.5)	1,409 (0.2)	1,412 (0.2)	1,409 (0.1)	1,424 (1.1)	1,398 (-2.4)	1,396 (-2.0)	1,380 (-3.1)
숙박 및 음식점업	2,098 (6.4)	2,179 (3.9)	2,277 (4.5)	2,175 (7.0)	2,263 (4.0)	2,230 (1.8)	2,266 (1.5)	2,296 (1.5)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714 (3.1)	772 (8.1)	786 (1.8)	770 (5.5)	771 (0.1)	796 (5.4)	786 (4.1)	784 (1.6)
금융 및 보험업	837 (-3.0)	789 (-5.8)	797 (0.9)	797 (-5.5)	788 (-1.2)	784 (1.0)	770 (-1.1)	768 (-2.6)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8 (4.6)	535 (5.3)	570 (6.7)	532 (7.0)	562 (5.6)	614 (12.9)	626 (16.2)	621 (10.3)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1,025 (0.3)	1,048 (2.3)	1,102 (5.2)	1,034 (2.6)	1,109 (7.2)	1,094 (1.4)	1,097 (0.4)	1,101 (-0.7)
사업서비스	1,180 (0.6)	1,249 (5.8)	1,293 (3.5)	1,267 (5.6)	1,307 (3.1)	1,249 (-5.0)	1,264 (-2.4)	1,308 (0.1)
공공행정 등	957 (-0.8)	936 (-2.2)	993 (6.1)	961 (-4.7)	1,032 (7.5)	1,025 (4.0)	1,032 (1.6)	1,057 (2.4)
교육 서비스업	1,807 (3.4)	1,818 (0.6)	1,846 (1.5)	1,806 (0.0)	1,851 (2.5)	1,899 (5.4)	1,927 (4.8)	1,931 (4.3)
보건업 및 사회복지	1,693 (8.9)	1,770 (4.5)	1,851 (4.6)	1,789 (4.7)	1,877 (5.0)	1,911 (5.6)	1,912 (3.6)	1,929 (2.7)
예술·스포츠·여가	394 (0.4)	424 (7.8)	406 (-4.3)	440 (15.9)	407 (-7.5)	413 (10.1)	415 (6.8)	419 (3.0)
협회·단체·수리·기타	1,299 (-1.0)	1,277 (-1.7)	1,272 (-0.4)	1,280 (-3.9)	1,283 (0.2)	1,250 (-1.7)	1,269 (-1.4)	1,270 (-1.0)
가구내 및 자가	116 (-32.5)	82 (-29.0)	69 (-15.6)	85 (-27.5)	70 (-17.4)	72 (2.0)	70 (0.6)	69 (-2.1)
국제 및 외국기관	14 (91.9)	18 (29.6)	16 (-11.4)	16 (26.6)	19 (22.3)	10 (-34.8)	11 (-42.9)	11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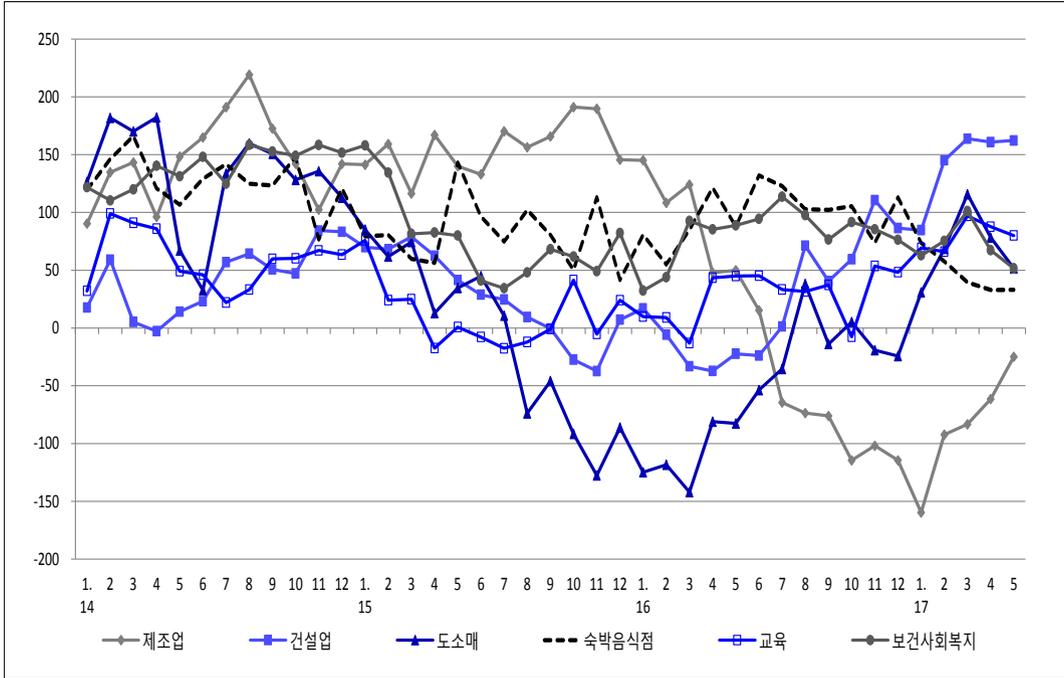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 통계청(2017. 6), 『2017년 5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정성미,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7년 3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4% 증가

- 2017년 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93천 원(3.4% ↑)임.
 - － 2017년 3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한 3,575천 원으로 상승폭이 둔화한 가운데,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한 1,500천 원으로 상승폭이 확대됨.
 - － 상용근로자의 임금감소는 특별급여증가율의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7년 3월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1% 상승
 - － 2017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상승률은, 명목임금상승률이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이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확대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함.

◆ 2017년 1~3월 평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2.5%, 0.5% 상승에 불과

- 특히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5.3% → 2.1%)이 크게 둔화함.
 - － 이는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증가율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에 기인함.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5.6%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됨.

◆ 2017년 4월 협약임금 인상률 3.8%

- 2017년 4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3.8%로 전년동월(5.0%)에 비해 상승률 둔화
 - － 2017년 4월 현재 임금결정 진도율은 3.0%로 전년동월 6.6%에 비해 더딤.

〈표 1〉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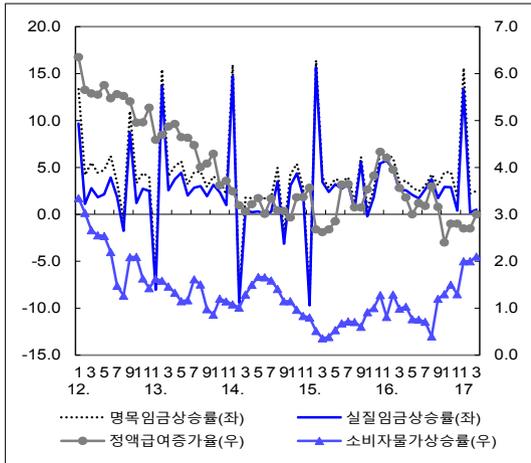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2017			
					1~3월 평균	3월	1~3월 평균	3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111 (3.9)	3,190 (2.5)	3,300 (3.5)	3,425 (3.8)	3,534 (5.3)	3,283 (3.4)	3,624 (2.5)	3,393 (3.4)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299 (3.8)	3,378 (2.4)	3,490 (3.3)	3,623 (3.8)	3,473 (3.6)	3,809 (2.1)	3,575 (2.9)
	정액급여	2,578 (4.4)	2,660 (3.2)	2,749 (3.3)	2,838 (3.3)	2,826 (3.9)	2,817 (3.6)	2,911 (3.6)
	초과급여	184 (1.7)	201 (9.3)	216 (7.4)	225 (3.8)	217 (4.6)	228 (3.8)	219 (0.7)
	특별급여	537 (1.8)	516 (-3.7)	525 (1.6)	560 (6.7)	686 (11.9)	427 (3.9)	679 (-1.0)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377 (6.5)	1,387 (0.7)	1,424 (2.7)	1,469 (3.1)	1,439 (2.1)	1,413 (2.1)	1,520 (5.6)	1,500 (6.2)
소비자물가지수	107.8 (1.2)	109 (1.3)	109.8 (0.7)	101.6 (1.0)	100.6 (0.9)	100.6 (0.8)	102.7 (2.1)	102.8 (2.2)
실질임금증가율	2.5	1.2	2.7	2.8	4.4	2.6	0.5	1.1

-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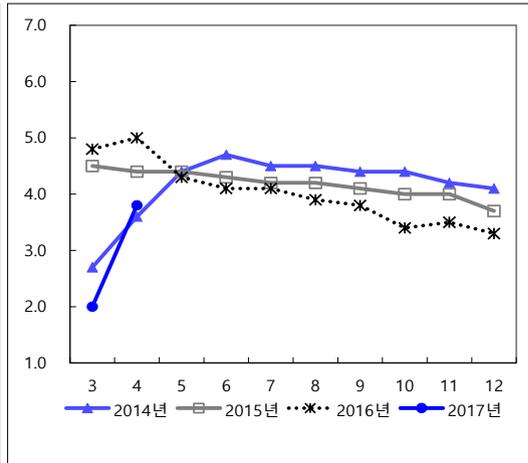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5=100.0)



〔그림 2〕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월)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7년 3월 중소기업 임금상승폭 확대

- 2017년 3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9%, 0.7% 증가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큰 폭의 임금상승폭 둔화는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감소폭이 컸던 데 기인함. 조선업 등 경기불황 여파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에서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감소하여 임금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침.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됨. 이는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증가율이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한 가운데 특별급여증가폭이 확대된 데 기인함.

◆ 2017년 1~3월 평균 중소기업 임금 증가세를 이어가는 한편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감소

- 2017년 1~3월 평균 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0.7% 감소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감소는 큰 폭의 정액급여증가율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에서 비롯됨. 반면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은 특별급여증가율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정액급여증가율 확대에 의해 전년동평균대비 4.5%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5	2016	2017			
				1~3월 평균	3월	1~3월 평균	3월
중소 규모	소 계	2,938 (3.6)	3,048 (3.7)	3,063 (4.0)	2,951 (3.3)	3,200 (4.5)	3,096 (4.9)
	상용임금총액	3,110 (3.4)	3,228 (3.8)	3,237 (4.1)	3,124 (3.5)	3,369 (4.1)	3,264 (4.5)
	정액급여	2,577 (2.9)	2,660 (3.2)	2,644 (3.3)	2,639 (3.2)	2,745 (3.8)	2,749 (4.2)
	초과급여	184 (6.6)	197 (7.3)	188 (7.7)	199 (8.5)	196 (4.3)	205 (3.1)
	특별급여	349 (5.3)	371 (6.1)	406 (7.3)	287 (3.2)	429 (5.6)	311 (8.3)
	비상용임금총액	1,434 (3.2)	1,486 (3.6)	1,440 (2.4)	1,440 (2.8)	1,525 (5.9)	1,529 (6.2)
대규모	소 계	4,849 (3.7)	4,959 (2.3)	5,453 (5.3)	4,613 (0.9)	5,417 (-0.7)	4,645 (0.7)
	상용임금총액	5,017 (3.9)	5,131 (2.3)	5,606 (5.3)	4,794 (1.1)	5,564 (-0.7)	4,816 (0.5)
	정액급여	3,438 (5.1)	3,519 (2.3)	3,521 (3.9)	3,493 (2.7)	3,575 (1.5)	3,591 (2.8)
	초과급여	349 (10.4)	331 (-5.2)	330 (-4.6)	341 (-8.6)	311 (-5.8)	315 (-7.8)
	특별급여	1,230 (-0.7)	1,281 (4.2)	1,755 (10.5)	959 (-0.6)	1,678 (-4.4)	910 (-5.1)
	비상용임금총액	1,329 (-1.8)	1,311 (-1.4)	1,425 (-0.8)	1,185 (-3.1)	1,467 (2.9)	1,259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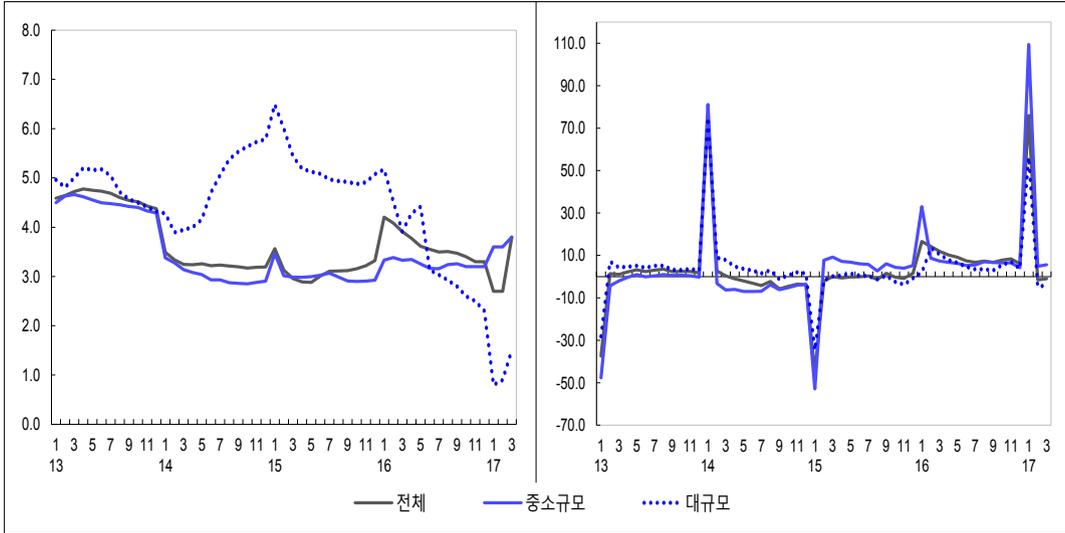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1~3월 평균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정액급여증가율과 특별급여증가율 추이

(단위 : %)



주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7년 3월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0.9%)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17년 3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7.3%)이었으며, 광업(7.1%), 도매 및 소매업(6.2%)도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함.
 - 반면 금융 및 보험업(1.1%), 사업시설 및 사업서비스업(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은 평균 임금상승률에 못 미치는 1%대 상승률을 기록함.
 - 3월 임금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937천 원)이며,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7,389천 원)임.

◆ 2017년 1~3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전산업에서 증가

- 2017년 1-3월 평균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6.6%)이었음.
 - 도매 및 소매업(5.6%), 여가관련 서비스업(5.5%),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4.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4%) 등이 평균 임금상승률을 상회한 가운데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0.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 등은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기록함.

- 1~3월 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992천 원)이며,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405천 원)임.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5	2016	2017			
			1~3월 평균	3월	1~3월 평균	3월
전 산업	3,300 (3.5)	3,425 (3.8)	3,534 (5.3)	3,283 (3.4)	3,624 (2.5)	3,393 (3.4)
광업	3,676 (5.6)	3,796 (3.3)	3,759 (5.2)	3,623 (3.1)	3,823 (1.7)	3,880 (7.1)
제조업	3,617 (3.2)	3,755 (3.8)	3,988 (6.0)	3,446 (1.7)	4,051 (1.6)	3,552 (3.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856 (5.4)	6,330 (8.1)	6,187 (6.7)	7,456 (4.1)	6,207 (0.3)	7,389 (-0.9)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945 (4.8)	3,118 (5.8)	3,043 (5.3)	2,927 (4.0)	3,173 (4.2)	3,042 (3.9)
건설업	2,591 (3.8)	2,673 (3.2)	2,758 (4.4)	2,656 (3.5)	2,840 (3.0)	2,743 (3.3)
도매 및 소매업	3,292 (2.7)	3,428 (4.1)	3,494 (5.9)	3,387 (6.5)	3,690 (5.6)	3,598 (6.2)
운수업	2,952 (5.3)	3,102 (5.1)	3,052 (7.2)	2,913 (6.4)	3,145 (3.0)	3,007 (3.2)
숙박 및 음식점업	1,824 (2.2)	1,881 (3.1)	1,869 (2.3)	1,848 (0.3)	1,992 (6.6)	1,937 (4.8)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4,012 (2.7)	4,146 (3.3)	4,255 (5.2)	4,000 (1.1)	4,402 (3.4)	4,291 (7.3)
금융 및 보험업	5,488 (4.9)	5,712 (4.1)	6,145 (4.8)	6,110 (6.1)	6,405 (4.2)	6,177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478 (6.7)	2,617 (5.6)	2,581 (4.7)	2,490 (4.0)	2,657 (2.9)	2,579 (3.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561 (3.2)	4,817 (5.6)	4,698 (8.8)	4,528 (4.9)	4,903 (4.4)	4,710 (4.0)
사업서비스업	2,002 (4.1)	2,077 (3.7)	2,045 (3.6)	2,021 (3.8)	2,106 (3.0)	2,053 (1.6)
교육서비스업	3,483 (3.2)	3,556 (2.1)	3,782 (2.1)	3,231 (1.3)	3,889 (2.8)	3,410 (5.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72 (2.7)	2,860 (3.2)	2,873 (3.2)	2,829 (3.9)	2,909 (1.3)	2,877 (1.7)
여가관련 서비스업	2,512 (4.7)	2,618 (4.2)	2,611 (7.4)	2,578 (8.4)	2,754 (5.5)	2,716 (5.4)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326 (3.4)	2,477 (6.5)	2,447 (8.9)	2,337 (7.4)	2,568 (4.9)	2,433 (4.1)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7년 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한 179.0시간(월력상 근로일수 21.4일로 전년동월대비 0.1일 감소)

○ 2017년 3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 대비 1.4시간 감소한 179.0시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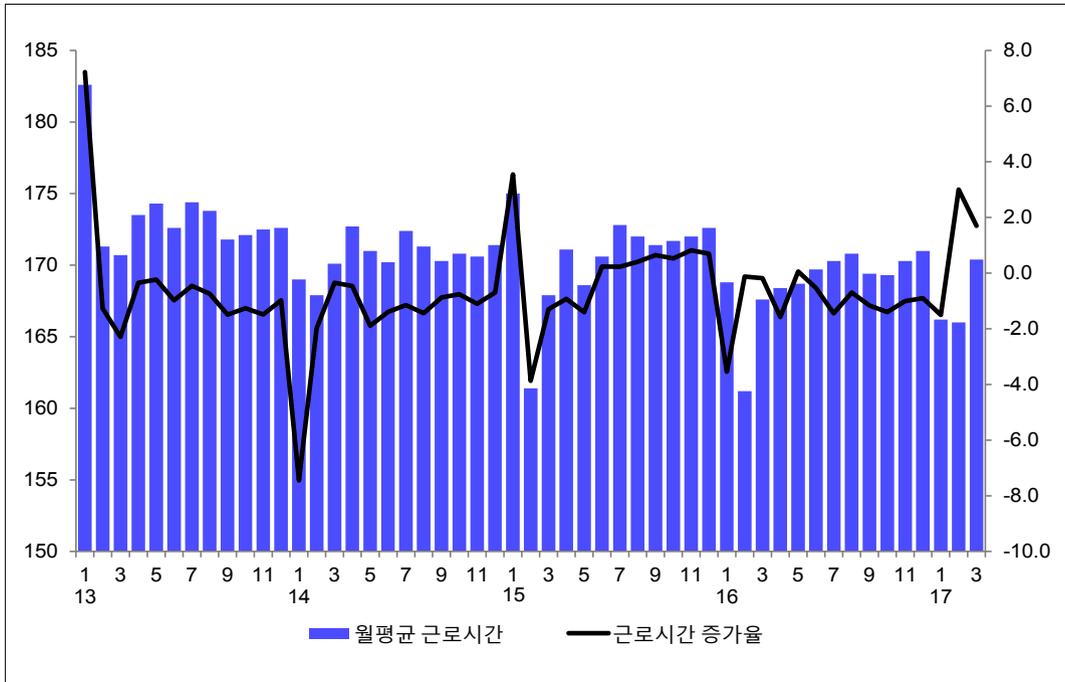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85.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0% 감소했으며, 임시·일용직 근로시간은 112.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함.

◆ 2017년 1~3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한 170.4시간(월력상 근로일수 20.4일로 전년동월대비 0.5일 증가)

○ 2017년 1~3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5.4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6% 증가하였고, 비상용근로자는 112.8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3% 감소함.

[그림 4]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증가율(1~3월 평균) 추이

(단위 : 시간, %)



주 :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7년 3월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 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7%, 1.2% 감소(사업체규모별 1~3월 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의 증가로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평균대비 증가)

○ 3월 중소규모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180.0시간, 대규모 사업체는 174.7시간으로 나타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초과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5.1% 감소함.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5	2016	2017			
				1~3월 평균	3월	1~3월 평균	3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73.2(0.7)	172.0(-0.7)	168.1(-0.1)	181.2(-0.2)	171.0(1.7)	180.0(-0.7)
	상용 총근로시간	179.6(0.7)	178.6(-0.6)	173.9(0.1)	188.6(0.1)	176.8(1.7)	186.9(-0.9)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7.4(0.8)	166.1(-0.8)	162.1(0.1)	175.9(-0.1)	165.2(1.9)	174.5(-0.8)
	상용 초과근로시간	12.2(0.0)	12.4(1.6)	11.8(0.0)	12.6(1.6)	11.6(-1.7)	12.4(-1.6)
	비상용근로시간	117.5(-1.5)	115.7(-1.5)	114.5(-1.5)	117.3(-1.0)	113.5(-0.9)	115.5(-1.5)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9.7(0.5)	166.9(-1.6)	165.5(-0.5)	176.9(-0.3)	167.8(1.4)	174.7(-1.2)
	상용 총근로시간	173.7(0.9)	170.8(-1.7)	168.0(-0.5)	182.0(-0.1)	170.1(1.3)	179.2(-1.5)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8.3(1.1)	157.0(-0.8)	154.0(0.7)	167.4(1.1)	158.1(2.7)	166.9(-0.3)
	상용 초과근로시간	15.4(-1.3)	13.7(-11.0)	14.0(-11.4)	14.6(-12.6)	12.1(-13.6)	12.4(-15.1)
	비상용근로시간	86.9(-7.4)	85.5(-1.6)	98.1(-2.6)	80.0(-2.4)	105.7(7.7)	85.6(7.0)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7년 3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제조업 등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 (산업별 1~3월 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3%)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2.3%)이었으며,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2.2%), 운수업(-1.6%)에서도 감소폭이 큼.
 - 반면 광업(3.9%),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2.3%),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0.8%), 여기관련서비스업(0.4%),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0.3%)에서는 근로시간이 증가함.
- 1~3월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광업(4.6%)이었으며,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3.3%), 금융 및 보험업(3.3%)에서도 증가폭이 큼.
 - 운수업(0.1%), 사업시설 및 사업서비스업(0.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0.7%)에서 근로시간 증가폭이 미미했으며,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86.0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46.3시간)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5	2016	2017			
			1~3월 평균	3월	1~3월 평균	3월
전 산업	172.6 (0.7)	171.0 (-0.9)	167.6 (-0.2)	180.4 (-0.2)	170.4 (1.7)	179.0 (-0.8)
광업	179.2 (-0.1)	179.0 (-0.1)	173.4 (-0.1)	185.4 (0.5)	181.3 (4.6)	192.7 (3.9)
제조업	186.3 (0.5)	184.5 (-1.0)	180.1 (-0.6)	195.3 (-0.2)	183.4 (1.8)	194.2 (-0.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0.8 (0.2)	167.5 (-1.9)	163.7 (-2.0)	172.4 (1.8)	167.2 (2.1)	168.6 (-2.2)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77.8 (0.0)	177.1 (-0.4)	173.6 (1.5)	185.8 (1.1)	178.7 (2.9)	190.1 (2.3)
건설업	147.4 (-0.7)	145.7 (-1.2)	143.3 (-0.7)	153.8 (-0.3)	146.3 (2.1)	152.2 (-1.0)
도매 및 소매업	172.9 (0.3)	171.4 (-0.9)	167.7 (-0.3)	181.1 (-0.4)	170.9 (1.9)	180.0 (-0.6)
운수업	173.9 (0.5)	172.3 (-0.9)	169.8 (0.0)	180.2 (0.2)	170.0 (0.1)	177.4 (-1.6)
숙박 및 음식점업	175.3 (0.1)	172.3 (-1.7)	168.6 (-2.1)	178.6 (-2.0)	170.7 (1.2)	176.3 (-1.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4.3 (1.5)	163.3 (-0.6)	159.6 (0.2)	174.0 (0.0)	164.8 (3.3)	174.6 (0.3)
금융 및 보험업	164.3 (0.6)	162.8 (-0.9)	159.6 (-0.3)	174.9 (0.2)	164.8 (3.3)	174.2 (-0.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2.8 (1.4)	191.2 (-0.8)	188.5 (0.4)	199.5 (-0.7)	186.0 (-1.3)	194.9 (-2.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4.9 (1.0)	163.3 (-1.0)	159.6 (0.2)	174.3 (0.1)	164.1 (2.8)	173.9 (-0.2)
사업서비스업	173.2 (0.8)	171.7 (-0.9)	168.3 (-0.1)	178.4 (-0.3)	169.2 (0.5)	177.4 (-0.6)
교육서비스업	151.5 (-0.3)	148.5 (-2.0)	146.0 (-1.5)	153.9 (-4.5)	149.9 (2.7)	151.7 (-1.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1.5 (1.1)	169.7 (-1.0)	165.9 (0.0)	179.4 (0.2)	167.1 (0.7)	175.9 (-2.0)
여가관련서비스업	160.6 (1.1)	159.7 (-0.6)	154.8 (0.3)	165.0 (-0.2)	157.7 (1.9)	165.6 (0.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3.7 (0.5)	163.6 (-0.1)	160.0 (1.1)	170.7 (0.8)	164.3 (2.7)	172.0 (0.8)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가계소득 동향

◆ 2017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9만 3천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실질 기준 1.2% 감소)

- 2017년 1/4분기 전국가구(2인 이상)의 경상소득(0.8%)과 비경상소득(1.7%) 모두 상승함.
 - 전국가구 경상소득의 증가는 재산소득(15.2%)과 기초연금 등이 증가함으로써 이전소득(5.3%)이 증가한 데 기인함.

〈표 1〉 전국가구(2인 이상)의 분기별 가계소득 동향

(단위 : 천 원, %)

	2016				2017	
	1/4분기		4/4분기		1/4분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4,555.2	0.8	4,312.0	0.2	4,593.3	0.8
경상소득	4,358.9	0.8	4,216.3	1.0	4,393.7	0.8
근로소득	3,021.8	0.3	2,905.8	0.4	3,021.5	0.0
사업소득	848.6	3.3	868.9	2.2	856.1	0.9
재산소득	18.7	-21.0	16.8	-4.4	21.6	15.2
이전소득	469.7	0.7	424.8	2.9	494.5	5.3
비경상소득	196.3	2.3	95.8	-23.9	199.6	1.7

자료 : 통계청(2017. 5), 『2016년 소득분배지표』.

〈표 2〉 2017년 1/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단위 : 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2003	5.28	5.04	5.28	5.00	4.43
2004	5.37	4.89	5.33	5.41	4.61
2005	5.70	5.15	5.32	5.21	4.75
2006	5.52	5.12	5.47	5.28	4.83
2007	5.70	5.18	5.52	5.34	4.95
2008	5.81	5.24	5.45	5.20	4.98
2009	5.93	5.16	5.48	5.23	4.95
2010	5.82	4.96	5.23	4.97	4.81
2011	5.66	4.89	5.19	5.15	4.80

〈표 2〉의 계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2012	5.44	4.76	4.98	5.05	4.69
2013	5.23	4.68	5.05	4.61	4.55
2014	5.15	4.58	4.73	4.54	4.45
2015	4.86	4.19	4.46	4.37	4.22
2016	5.02	4.51	4.81	4.63	4.49
2017	5.35				

주 :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 상위 20%(5분위) 평균소득 / 하위 20%(1분위) 평균소득.

2) 개인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 $\sqrt{\text{가구원수}}$.

3) 처분가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공적 비소비지출(경상조세 등).

4) 가구별 소득 수준은 계절성, 변동성 등으로 소득분위가 매 분기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어 분기별 5분위 배율을 통해 소득분배를 보는 데에 한계가 있음.

자료 : 통계청(2017. 5), 『2016년 소득분배지표』.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5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231건
 - 지난 5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220건)보다 11건 많은 수치임.
- 지난 5월 조정성립률 61.2%
 - 지난 5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66.7%에 비해 5.5% 낮아진 수치임.

〈표 1〉 2016년, 2017년 5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7.5	231	192	104	44	60	66	12	54	4	18	39	61.2
2016.5	220	181	104	38	66	52	5	47	6	19	39	66.7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지난 5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6,181건
 - 지난 5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6,685건)보다 504건 낮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14.6%(671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85.4%(3,932건)를 차지함.

〈표 2〉 2016년, 2017년 5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7.5	6,181	4,603	587	84	806	286	1,643	1,197	1,578
2016.5	6,685	4,814	646	101	795	318	1,907	1,047	1,87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정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공공기관의 종전 결정 7월 말까지 폐기

- 기재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2010년 6월 도입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급(1~2급)에서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했고, 고성파자와 저성파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2%에서 3%로 확대했음.
-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기간(공기업 지난해 6월 말, 준정부기관 지난해 12월 말) 안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지 못한 기관은 올해 총인건비를 동결하고,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을 줌.
- 이 과정에서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확대한 기관이 속출했고, 노조는 잇따라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표 3〉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및 미합의 기관현황

	공기업(30)	준정부기관(89)
노사합의(71)	전력공사 · 동서발전 · 광물자원공사 · 대한석탄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감정원 · 해양환경관리공단 · 인천항만공사 · 울산항만공사 · 방승광고진흥공사 · 마사회(11)	무역보험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광해관리공단 · 디자인진흥원 · 산업기술진흥원 · 산업단지공단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석유관리원 · 에너지기술평가원 · 전력거래소 · 원자력환경공단 · 교통안전공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시설안전공단 · 우체국금융개발원 · 우편사업진흥원 · 우체국물류지원단 · 과학창의재단 · 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연구재단 · 선박안전기술공단 · 수산자원관리공단 · 해양과학기술진흥원 · 해양수산연구원 · 국제방송교류재단 · 언론진흥재단 · 아시아문화원 · 문화예술포럼위원회 · 보건산업진흥원 · 노인인력개발원 · 보건의료인력개발원 · 사회보장정보원 · 농림수산물품질평가원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어촌공사 · 예금보험공사 · 주택금융공사 · 국립공원관리공단 · 환경산업기술원 · 국립생태원 · 환경공단 · 장학재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 소방산업기술원 · 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기념관 · 국제협력단 · 공무원연금공단 · 임업진흥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지식재산전략원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기상산업진흥원 · 도로교통공단(60)
노사미합의(48)	가스공사 · 석유공사 · 지역난방공사 · 수력원자력 · 중부발전 · 서부발전 · 남부발전 · 남동발전 · 인천국제공항공사 · 수자원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토지주택공사 · 도로공사 · 한국공항공사 · 철도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 · 관광공사 · 조폐공사(19)	에너지공단 · 가스안전공사 · 전기안전공사 · 국토정보공사 · 철도시설공단 · 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정보화진흥원 · 콘텐츠진흥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 영화진흥위원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고용정보원 · 안전보건공단 · 산업인력공단 · 장애인고용공단 · 근로복지공단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가산관리공사 · 교육학술정보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 청소년활동진흥원 · 승강기안전공단 · 원자력안전기술원 · 소비자원(29)

자료 : 매일노동뉴스, 「1년 5개월 만에 폐기되는 성과연봉제 지침, 강제 도입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7월 말까지 되돌린다」 (2017. 6. 15).

- 6월 13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노정협의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 방안에 대해 논의함.

-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힘.
- 이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성과연봉제 적용자 확대를 완료한 119개 공공기관 중 노사합의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 등으로 제도를 확대한 48개 기관은 이사회를 열어 종전 결정을 폐기해야 하고,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한 기관은 노사합의를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돌릴 수 있음.
- 기재부는 지난해 말이었던 성과연봉제 도입 이행 기한을 없애고 기한 내 미도입 시 공공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던 인건비 동결 페널티도 폐지했음.
- 또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가점(100점 만점 중 3점)을 주는 제도도 없앴음.

◆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해제 노사합의

- 갑을오토텍 회사는 철야농성 344일, 불법직장폐쇄 326일 만인 지난 6월 16일 오후 ‘직장폐쇄 해제 및 업무복귀’를 알리는 공고를 붙여 통보하였음.
 - 경찰·특전사 출신 신입사원을 채용해 복수노조 설립에 활용하는, 이른바 ‘노조파괴 용병’으로 물의를 빚은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은 작년에 해당 사태와 별도로 2015년 임금교섭과 2016년 임금·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었음.
 - 지회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2015년 6월부터 조합원 지명파업·태업을 간헐적으로 벌여 왔고, 이에 갑을오토텍은 지난 2016년 7월 26일 공고를 통해 “노조의 장기간 쟁의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회사는 부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직장폐쇄를 공고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음.
 - 직장폐쇄에 따라 지회는 직장폐쇄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고, 가처분 결과를 앞두고 노사는 고용노동부 중재로 교섭을 했음.
 - 노사의 합의로 회사는 공장 내부에 ‘직장폐쇄 해제 및 업무복귀’ 공고문을 내고 “21일 오전 7시 40분부로 직장폐쇄를 해제하며 대상 직원들의 업무복귀를 시행한다”고 밝힘.
 - 지회 관계자는 “1년여간 무임금이던 가장들의 어깨에서 비로소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게 돼 기쁘다”면서도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많은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와 재계 대립

- 최저임금위는 지난 6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그리고 최저임

금위에 불참했던 양대 노총과 노동자위원들이 참여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음.

-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회의 시작부터 최저임금 인상 규모를 놓고 대립함.
- 사용자 위원인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대통령 공약사항(2020년까지 1만 원 인상)에 대해 다양한 찬반 목소리가 있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이 매우 커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힘.
- 노동자 위원인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시급 1만 원·월급 209만 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안을 주장함.
- 본격적인 최저임금 협상은 6월 27일로 예정된 4차 전원회의에서 시작될 전망이며, 28일 5차 전원회의, 29일 6차 전원회의를 계획하고 있음.
- 내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6월 29일까지로,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함.

○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하면서 집회와 행사를 각지에서 개최하고, 소상공인 업계와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부작용을 알리고 있음.

- 민주노총·알바노조를 비롯한 7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만 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은 6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공원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6·17 걷기대회 만원런’ 행사를 개최하였음.
- 이 밖에도 마트노동자들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6월 19일부터 시작했고, 민중의 꿈은 같은 날인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농성에 돌입했음.
- 반면 소상공인 업계는 지난 6월 5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현 최저임금 인상안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난함.
- 또한 6월 15일 자유한국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인천 남동산단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1만 원이 실현되면 중소기업은 임금 지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식당과 편의점 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를 표시함.

◆ 국제노동기구(ILO), 정부에 노동문제 해결 권고

○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무원노조·전교조 범외노조 조치를 철회하고, 노조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함.

- ILO 이사회는 지난 6월 17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공무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철도노조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한국의 노동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함.
-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민주노총이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1865호 사건(공무원·교사 노동3권 및 정치적 자유 제약에 관한 제소)을 1996년부터 심의해 왔고, 여러 차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우리나라 정부는 20년이 넘도록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음.
- 보고서에는 △전교조 법외노조·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파업을 이유로 한 업무방해죄·손배가압류 적용 문제가 포함됨.
 - 해고된 교사·공무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관련법을 폐지하고, 교사·공무원이 사회 문제에 대해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주문하였으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노사 자율교섭으로 다루도록 하라고 권고함.
 - ILO는 철도노조 파업을 언급하면서 “평화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보고서에 적시함.
 - 이에 민주노총은 6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ILO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고 밝힘.

◆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신문고’ 개통

- 국민 정책제안 및 일자리 민원 소통 공간 마련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와 관련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일자리 문제로 인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일자리 신문고’를 6월 4일(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힘.
 - 정책제안이나 민원 접수 희망자는 ‘일자리 신문고’ 홈페이지(www.jobs.go.kr)에 접속하여 이름, 전화번호, 메일주소와 함께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됨.
 - 접수된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절차 또는 결과를 회신받게 되며, 정책제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자리 정책에 반영한다고 함.
 -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청와대는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되고,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단 1원의 국가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힘.

◆ 2017년 고용노동부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

○ 편성 방향

- 청년 구직난 등 어려운 일자리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공약의 조기 이행을 위해 편성. ①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기회 확대, ② 청년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지원,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신중년 인생 삼모작 설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③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미래 유망분야 인력양성 확충

○ 추가 증액 규모

- 2017년도 고용부 추가 증액규모(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는 +4,167억 원 규모 * (2017년 본예산) 18조 2,614억 원 → (2017년 추경 등) 18조 6,781억 원 <2.3%↑>
- 이 중 일반·특별회계 및 증액규모가 큰 고용보험기금은 국회 제출 예정
- 나머지 고용부 소관 기금은 자체 기금운용계획 변경 추진(+200억 원)

〈표 4〉 주요 제도 개선사항

사업명	현행				개선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신설>				· 청년 3명 채용시 1명 인건비 지원(연 최대 2천만 원, 3년) * 전기차, IOT가전 등 성장유망 업종 중심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지원]				·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월 30만 원 × 3개월)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I 유형	25만 원	월 40만 원	150만 원	
	II 유형	20만 원	월 40만 원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가입시)	· 본인: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1,200만 원 + @ 적립				· 본인: 300만 원 · 정부: 9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1,600만 원 + @ 적립
모성보호 육아지원	· 소득대체율: 40% · 상한액: 100만 원 · 하한액: 50만 원				· 소득대체율: 80% · 상한액: 150만 원 · 하한액: 70만 원
생활안정 자금대부 (혼례비 용자 한도)	· 1,000만 원				· 1,500만 원
소액채당금 (상한액)	· 300만 원				· 400만 원

주: 소액채당금 - 기업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함.

자료: 고용노동부, 2017년 고용노동부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

◆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았던 화학물질의 고유명칭과 강화된 근로자 보호조치 공표**

-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된 신규화학물질 761종 정보를 공개함.
 -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이 처음 제조·수입되었을 때 정보보호 신청에 따라 물질의 ‘고유명칭’ 대신 ‘상품명’으로 공표했던 화학물질 761종의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유명칭’을 공표함.
 - 고유명칭을 공개하면서 기존에 공표한 상품명, CAS번호(화학물질 고유번호: Chemical Abstract Service), 근로자보호조치 등을 함께 기재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은 더 이상 신규화학물질이 아니므로 공표 이후 해당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장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근로자와 국민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KLI**

(송민수,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정재우,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